



Grant Thornton

An instinct for growth™

2015년1월1일부터 실업보험 및의료 보험의 납부의무에 대한 변경

2014년 11월 28일



국회의 근무법규 No. 38/2013/QH13 :

실업보험의 납부의무에 대한 변경

2015년 1월 1일부터 근무법규 No. 38/2013/QH13의 발효 및 사회보험법 No. 71/2006/QH11.의 실업보험 각규정 들을 대신해 준다.

일부 주의점들이 다음 :

1. 노동고용자에 관련:

- 실업보험을 가입하는 노동고용자는 다음 포함:
 - 국가 기관, 국립업무조직, 인민무장조직 ;
 - 정치조직, 정치-사회조직, 정치사회-업종 조직, 사회 조직, 사회 -업종 조직;
 - 외국기관, 조직, 베트남국내에 활동한 국제조직;
 - 근무계약이나 노동계약에 따른 노동자고용, 용인이 있는 기업, 합작사, 가족, 영업가, 기타조직 및개인들 포함;
- 노동고용자는 근무계약이나 노동계약서의 발효부터 30일내 사회보험조직에 노동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한다.
- 매월에 노동고용자는 실업보험료를 납입하고 매노동자 의 월급중에 일부 배내서 같이 실업기금에 납금한다.

- 노동고용자는 실업 보험을 가입중의 노동자들의 월급의 1%로 입금해준다.

2. 노동자에 관련 :

- 노동자는 근무계약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할때 실업보험을 다음 처럼 가입해야 한다:
 - 기한이 없는 근무계약이나 노동계약;
 - 기한있는 근무계약이나 노동 계약;
 - 3개월 정부터 12개월 이하에 계절근무하나 일정한 업무를 하는 계약.

노동자가 근무 약속 (Engage in)있고 여러 노동계약을 집행 하는중에 노동자 와 처음 노동 약속계약의 고용자 가 실업보험을 가입하는 책임이 있다.

- 노동자는 월급의 1%로 실업보험료를 납입한다.



국회의 근무법규 No. 38/2013/QH13 :

실업보험의 납부의무에 대한 변경

실업보험료를 납입한 봉급의 근거:

- 실업보험을 가입하는 노동자가 고용자의 결정 된봉급제도에 근거하면 실업보험료를 납입하는 월급은 실업보험 납입근거의 월급이고 사회보험 법규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집행한다.
- 실업보험 가입의 월급은 해당 지역의 최저월급 보다 20배 더 많으면 실업보험 가입한 월급기준이 실업보험가입 시점에 노동법에 규정된 지역 최저 월급의 20 배와 같이 가입한다.

실업 보조금의 수혜:

매월 실업 보조금은 실업하기전의 연속적 6개월내 월급의 평균금액의 60%로 되지만 고용자가 근무 계약 이나 노동계약에 대한 종료를 결정하는 시점에 노동법의 규정 따라 지역별 최저 월급기준 보다 5배 불과한다.

실업 보조금을 수혜하는 기간:

실업 보조금의 수혜시간을 실업보험료를 납입하는 개월수 로 계산하고 정12 개월 부터 정 36 개월로 가 입하면 실업 보조금을 3개월분을 받고 그후 12개 월 더 가입하면 실업 지원금의 1개월 더수혜하 지만 최대 12개월 불과한다.

실업 보조금 수혜를 위한 합격서류를 제출후 16일째부터 실업보조금을 받은 시점이다.

주의 다음: 노동자는 비법적 근무 계약 및 노동계약을 단독 적으로 중단하면 실업보조금수혜를 받지못한다.

실업보조금 수혜자의 취직 에 대한 통보:

- 매월에 노동자는 실업보조금을 받은 지방의 취직서비스 센터에 직접 일을 찾는통보를 해준다. 단, 다음경우 제외:
 - 노동자가 공신력 건강 진단소의 증반이 있는 질병, 임신 과 출산, 사고등의 경우.
 - 불가항 경우.
- 실업보조금의 수혜자가 매월 취직신청을 통보해주 않고 보조 수혜를 임시적 중지된경우.

향후에 정부는 법규 시행령을 발급해서 근무 법규의 일부 사항을 안내해준다. 관련 문서의 발급시에 우리 는 귀빈들에게 업테드를 해드린것다.

의료보험 법규의 변경, 보충 관련 : 의료보험료의 납부의무에 대한 변경

노동 고용자의 부담 : 4% (현재 3%) .

2015년1월1일 부터 변경, 보충 법규인 의료보험법 **No. 46/2014/QH13** (“법규 No. 46”)은 발효한다 .

2014년11월 15일에 정부는 의령 **No.105/2014/NĐ-CP** 을 발급해서 의료보험법규 (“의령105”)의 세부적 규정 및 시행안내를 2015년1월1일부터 발효한다.

법규 No. 46 에 주목된 일부 변경 다음 :

노동자는 기한 미정 노동계약 이나 3개월이상의 노동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및 회사영업관리 직의 노동자가 월급을 받는 사람 과 간부, 공직원들의 의료보험료의 납부가 최대 월급의 6%로 되고 그중엔 :

- 노동자 부담 : 2%
- 고용자 부담 : 4%

그렇지만 의령 **No.105** 엔 상기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기준이 노동자 월급의 4.5%로 아직 유지되고 그 중에 노동자의 부담: 1.5% 이고 고용자의 부담이 3% 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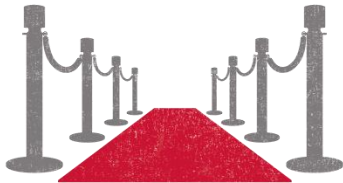
연락처

본 소식통의 정보들이 통보시점 전까지 효력이있는 조세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하거나 종합한다. 우리GT Vietnam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 회사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한다. Grant Thornton (VietNam) 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손해 를 입는데 책임 지지않다.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시려면.

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 하시려면 우리의 다음 Web에 검색필 :

www.gt.com.vn

Mr. VINH : 한글 번역



Văn phòng Hà Nội

Tầng 18, Tòa tháp Quốc tế Hòa Bình
106 Hoàng Quốc Việt
Quận Cầu Giấy, Hà Nội
Việt Nam
ĐT + 84 4 3850 1686
F + 84 4 3850 1688

Hoàng Khôi

Partner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18
E Khoi.Hoang@vn.gt.com

Nguyễn Đình Du

Partner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20
E Du.Nguyen@vn.gt.com

Phạm Vinh

업무통역- 자문 : Korean Suport Desk
M. +84 16 2997 0877
E. Vinh.Pham@vn.gt.com

Kaoru Okata

Giám đốc - Khách hàng Nhật Bản
M +84 4 3850 1680
E Kaoru.Okata@vn.gt.com

Phạm Ngọc Long

Giám đốc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84
E Long.Pham@vn.gt.com

Kiều Hoài Nam

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81
E Nam.Kieu@vn.gt.com

Văn phò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

Tầng 28, Tòa nhà Saigon Trade Centre
37 Tôn Đức Thắng
Quận 1, Tp. Hồ Chí Minh
Việt Nam
ĐT + 84 8 3910 9100
F + 84 8 3914 3748

Nguyễn Hùng Du

Partner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1
E HungDu.Nguyen@vn.gt.com

Valerie – Teo Liang Tuan

Giám đốc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5
E Valerie.Teo@vn.gt.com

Tomohiro Norioka

Giám đốc - Khách hàng Nhật Bản
M +84 8 3910 9205
E Tomohiro.Norioka@vn.gt.com

Kozue Yasunaga

Trưởng phòng cấp cao - Khách hàng Nhật Bản
M +84 8 3910 9260
E Kozue.Yasunaga@vn.gt.com

Trần Nguyễn Mộng Vân

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3
E MongVan.Tran@vn.gt.com

Nguyễn Bảo Thái

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6
E Thai.Nguyen@vn.gt.com

Questions & feedback

